

## 2026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해외인턴사업 운영기업 모집공고

2026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해외인턴사업 운영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체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### 1 사업 목적

- 해외농업자원개발 추진 사업자의 수요와 일치하는 인재발굴과 채용 지원을 통한 해외농업자원개발 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
-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기업의 현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역량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지원 및 고용승계 유도를 통한 해외농업자원 개발 분야 인력난 해소

### 2 해외인턴사업 개요

- 사업운영기간: 2026. 3. 4 ~ 자금 소진 시 까지
- 근무장소: 운영기업 근무 명령지
- 인턴인원: 6명 내외
- 인턴기간: 2개월~6개월 내외
- 지원내역
  - 당해연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 급여 지원 : 2,157천원/월×6개월 범위 내
  - \* 단, 해외인턴 운영기업에서는 월 최저임금 이외에 급여지원 의무
  - 왕복항공료, 파견준비비, 인턴사원 교육지원비

○ 사업 추진절차

단 계	업 무 사 항	수 행 처
사업계획	해외인턴사업 운영계획 수립	협회
↓		
사업공고 신청접수	사업 운영기업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	협회
↓		
서류 접수 및 기업 선정평가	신청기업 운영계획 평가 및 운영기업 선정	협회
↓		
인턴사원 선발	인턴사원 공개선발 (기업 요청 시, 공개모집 절차 지원: 협회)	운영기업 (협회)
↓		
협약·약정 체결	3자 협약 체결	기업-협회-인턴사원
↓		
해외인턴 근무수행	표준협약에 따른 해외인턴 운영 (직무교육, 보고서 작성, 안전관리 등)	운영기업
↓		
고용승계 여부 확인	인턴사원 고용승계 여부 제출	운영기업
↓		
해외인턴 운영종료 및 사업비 정산	해외인턴 최종결과보고서 접수 사업비 정산	운영기업

**3** 해외인턴 운영기업 개요

□ 해외인턴 운영기업 모집

○ 해외인턴 운영기업 자격요건

-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
- 현지 국가의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
- 현지 법률상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한 기업
- 인턴사원에게 인건비 지원금 이외의 추가급여를 지급하고 안전한 근무 여건과 복리후생 지원이 가능한 기업

- 1인 이상의 인턴사원 관리자를 지정하여 인턴관리 체계를 갖추고 인턴사원에 대한 고충 상담, 멘토링 및 근태·업무수행 평가가 가능한 기업
- 해외인턴 운영기업 접수처: 홈페이지(oads.or.kr) - 소통알림 - 사업공고 게시물 내에 - 하단 [신청] 클릭 후 첨부파일 업로드
- 해외인턴 운영기업 제출서류

순번	제출 서류	비고
1	해외인턴사업 신청 공문 1부	자체 공문 양식
2	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수리 공문 사본 1부	(농림축산식품부)
3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
4	해외인턴사업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각 1부	붙임 1 참조
5	운영기업 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	붙임 9 참조
6	ESG경영 관련 실적 확인 증빙자료	해당 기업에 한함
7	인턴사원 채용 관련 사실 확인 증빙자료	협회 선발 요청 시 제출 불필요
8	인턴사원 채용 관련 서류	협회 선발 요청 시 제출 불필요
-	인턴사원 선발 증명서	붙임 2 참조
-	인턴사원 지원서(이력서 및 자기소개서)	붙임 3 참조
-	인턴사원 추천서	붙임 6 참조
-	최종학교 졸업증명서(또는 재학증명서)	
-	인턴사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	붙임 8 참조
-	자격증 및 어학 관련 증명서	해당자에 한함
-	보호자 동의서(학생)	붙임 7 참조(해당자에 한함)

- 해외인턴 운영기업 선정 방법
  - 신청기업에서 제출한 인턴 운영계획 등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
  - 경합 시 「해외인턴 운영기업 선정기준」 평가순위에 따라 선정

**□ 인턴사원 모집** \* 협회 선발 요청 시 아래의 자격을 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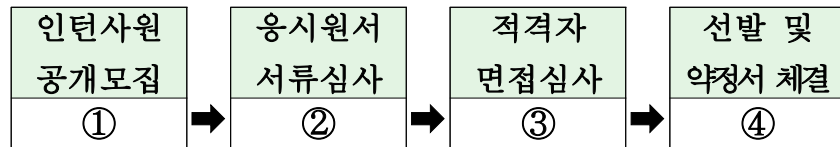
- 지원자격 \* 지원자 학력, 경력 제한사항 없음
  - 채용일 기준 만 20세 이상 구직 중인 미취업자
  -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건강, 언어, 비자 발급 등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  - 우대사항: 기업 선호 요건(어학성적, 전공 등)을 갖춘 자 \*유효증빙 필요
- 채용방법
  - 해외인턴 운영기업 별도 공모 절차에 의거, 적격자 선발하여 추천
    - \* 공모결과 적합 인원 없을 시 추천 형태의 인력모집 수행 가능

- 인력 운영계획 상 해외파견 전제 시, 일정 기간 국내법인 근무자 채용 가능
  - \* 국내법인 근무기간은 2개월 이하
- 해외인턴 운영기업에서 협회 선발 요청 시 인턴사원 선발 대행 가능

[협회 선발 요청 시 채용 지원 절차]

- ① 해외인턴 운영기업의 운영계획(인턴기간, 파견지역, 근무내용, 채용 계획, 근로조건 등)에 따라 공모하여, 인턴사원 지원자 모집
- ② 인턴사원 내부 선발기준을 근거로 서류 합격자 선발
- ③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운영기업 관계자와 함께 면접 심사 진행
- ④ 적격자 선발

<협회 채용지원 절차>



## 4 해외인턴 근무 개요

### □ 근무 방법

- 해외인턴 운영기업과 연계하여 해당기업 근무 명령지 발령 후 인턴 근무
- 인턴 기간: 2~6개월 내외 \* 국내법인 근무기간은 2개월 이하
- 근무지역 : 해외인턴 운영기업의 해외진출 현장 및 국내사업 현장

### □ 근무 조건

- 근무시간 및 복무조건 등은 해외인턴 운영기업 복무규정과 「근로기준법」 등 관계 법령 준수하되 위반 시 중도 인턴 계약 해지 가능
- 인턴 근무 후 기업 자체 평가를 거쳐 해당 기업 정규직 고용승계 추진
  - 해외인턴 운영기업은 협약서(운영기업-인턴사원)를 작성하고 인턴계약 기간 동안 기업의 책임으로 운영하여 평가를 거쳐 고용승계가 가능할 경우 인턴사원 채용

## 5 지원 내용

### ○ 급여

- 인턴 기간(2~6개월) 동안 월 최저임금 2,157천원 지원

- \* 인턴 기간 중, (유)무급휴직, 유급휴가, 쟁의행위, 결근 등의 사유로 약정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급 임금을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.
- \* 단, 해외인턴 운영기업에서는 월 최저임금 이외에 급여 지원 의무

### ○ 해외 파견 관련 비용

- 지원 내역: 왕복항공료, 파견 준비비, 교육지원비 등

지원항목	지원기준	지원기간	비고
인건비	월 2,157천원/인	2~6개월 내외	인턴 기간
항공료(국제선)	실비	1회	일반석(왕복)
파견 준비비	실비	1회	보험료, 비자발급, 예방접종비 등
교육지원비	실비	1회	어학, 농식품 등 업무 연관 분야 교육 수강

\* 운영기업별 세부 협의 후 시행

\* 당해년도 귀속 인건비는 연도 말 별도 정산 실시

## 6 기타 유의사항

### □ 운영 관리

#### ○ 운영기업 의무사항

- 인턴사원에게 인턴 기간 중 원활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 현지 근무환경 적응을 지원하고, 이에 필요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태관리 및 활동 등을 지원하는 책임자 1인 지정
- 파견 국가의 기본적인 노무, 비자, 문화적 적응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
- 인턴사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구성을 위한 관리체계(매뉴얼) 마련
  -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방지 및 발생 사건 해결을 위한 체계 구축
  - 현지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연락체계가 기재된 비상시 매뉴얼 마련
- \* 자체 매뉴얼 미보유 시, 협회 측 표준 관리 매뉴얼 의무 적용
- 유행성 질병 대비 근무지 안전 환경 구축 및 방역·소독 물품 구비 등
- 인턴사원 업무수행 관련 직무교육 등 2회 이상 실시

\* 실시 후 차월 활동보고서 제출 기간에 제출(교육 일자/내용/담당자 확인 등이 포함된 자체 양식 사용)

- 인턴사원 근태관리
  - 인턴사원의 근태 및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
  - 인턴 근무 시작일로부터 1개월, 종료 시 총 2회 제출
- 인턴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고용승계 여부 보고

○ 인턴사원 의무사항

- 1주일 단위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제출
  - \* 현지 상황에 따라 근무 기간 종료 후, 제출
- 인턴 근무 종료 후 2주일 이내 「인턴 참여 결과보고서」 제출

□ 계약 해지 사항

○ 운영기업에 대한 계약 해지

- 한국과 해당국의 노동법,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경우
- 인턴 운영 계약상의 중대한 위반 행위 시
- 현지법인 운영계획을 별도의 협의 없이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인턴사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,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
- 특별한 사유 없이 인턴 기간 종료 후 인턴사원의 채용을 거부한 경우
  - \* 위법·불법 행위로 인한 행정 처분 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

○ 인턴사원에 대한 계약 해지

- 별도의 통보 없이 활동 보고를 2회 이상 연속하여 누락한 경우
- 별도의 통보 없이 무단으로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연락 두절된 경우
- 국내 취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 귀국 및 인턴을 포기한 경우
- 질병 등으로 1개월 이상 인턴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로 주어진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운영기업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경우
- 인턴 기간 중 불법·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현지체류가 불가능한 경우
- 운영기업의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운영기업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
  - \* 필요한 경우, 인턴 철수 및 기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
붙 임: 2026년도 해외인턴사업 운영기업 신청 제출서류 각 1부. 끝.